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3

2018-3호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등 2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방안과 계룡시민의 역할 토론회 등 4건

■ 타 시 도 의회 주요동향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화 주민 상생발전 정책 토론회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충청남도의회 「삼천유공사 배우 및 단체실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조의 등 4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5)
-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7)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3)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
- ▶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19)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방안과 계룡시민의 역할 토론회 (23)
- ▶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토론회 (28)
- ▶ 우강면 지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 (41)
- ▶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방안 토론회 (48)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와 주민 상생발전 정책 토론회 (57)
- ▶ 경기도의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협력 MOU 체결 (58)
- ▶ 전라남도의회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59)
- ▶ 경상남도의회 지역기업 이용촉진 토론회 (60)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 해결사와 함께 다문화 가족과 첫 만남 (62)

최근 제·개정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6)
- ▶ 양성평등기본법 (67)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9)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71)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충청남도의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질의 (73)
-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질의 (76)
- ▶ 강원도의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관련 질의 (80)
-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의회규칙 제정 가능여부 질의 (8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시행 2018.3.20.] [경기도조례 제5857호, 2018.3.20., 제정]

□ 주요목적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건강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년기의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치매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
4.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5.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한 영양지도 등 영양개선사업
6. 자살 및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8.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9.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10.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노인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3. 노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3.21.] [경기도조례 제5873호, 2018.3.21.,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별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5.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감리용역”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건축사감리용역을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감리용역을 계약할 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및 도교육청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교육감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참가 제한 등)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발주청에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부실공사 신고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2.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 사업집행 업무 담당자 등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4. 학계, 시민단체, 건축 관련기관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 결정
3.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의 별점 및 등급 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이 제 1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 관리)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부실공사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경기도의회 교육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3.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414호, 2018.3.7., 제정]

□ 주요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아동 안전)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참여 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 홍보 및 지식 · 정보의 보급 등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 관 협력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의원
3.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 장소 ·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 관리한다.
-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 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행 2018.3.12.]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235호, 2018.3.12., 제정]

□ 주요목적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치매안심센터”란 법 제17조의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영도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 조기검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3.6.]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321호, 2018.3.6., 제정]

□ 주요목적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을 바탕으로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등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하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
 3. 자치분권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위원이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자치분권 촉진 사업 및 주민참여

제15조(자치분권 촉진 사업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지원사업
2. 자치분권 추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등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풀뿌리 주민자치 촉진)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발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개선·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자치의 기반을 촉진하는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방안과 계룡시민의 역할

<18. 2. 23.(금), 14:00~16:00 / 계룡시 보훈회관>



I 총 평

-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함
 - 군문화축제, 지상군페스티벌 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세계군문화엑스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
- 3군본부, 제대군인을 활용한 대외협력 기능 강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시민참여, 고정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II 주요 논의내용(요약)

1 주제발표

<김철규 본부장(사)군문화체험사업단>

- 성공적인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홍보 하고 수익 창출도 고려하여야 함(사례: 영국 에딘버러)
- 그동안 군문화축제는 육군의 지상군페스티벌 지원행사로 고착화되었으며, 콘텐츠의 단순화 및 군 협력기능 미흡으로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저조한 상태임. 성공적인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10여간 매년 20~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현재 잔존시설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도 포함되는 현대의 군문화와 미래의 4차 산업과 융합된 미래 군문화, 지역·나라사랑에 대한 문화들을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성 있음

2 지정토론 (5인)

① 남상오 회장(계룡시보훈단체협의회회장)

- 軍과 官의 조직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 3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와 관련하여
 - 제대한지 5~10년 된 전역 군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② 변영록 회장(충남대령연합회)

- 계룡시는 군사문화가 생활에 내재된 도시로서 군문화를 지역향토문화와 융화, 특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투철한 국가안보의식이 반영된 시민 행사로 발전 시켜야 함

- 지역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를 범국가적 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함께 지원하는 체제로 구축되어야 하며, 행사의 경제성·효율성,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군문화 관련 기념관(군사박물관, 군홍보관 등) 건립 필요

③ 권중봉 연구위원(계룡향토사)

- 각계각층의 다양한 계룡시민이 세계군문화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성공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10년간 진행 된 지상군 페스티벌, 군문화 축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국방부, 3군사령부 등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④ 임정진 회장(계룡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군문화 축제 주 행사장이 계룡대 비상활주에 위치하여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축제 주행사장의 변경이 필요하며, 고정시설을 설치하여 행사 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활용(지역 문화 및 축제 공간 등)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계룡시가 2020세계군문화엑스포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당부

⑤ 조한영 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

- 엑스포는 충남도와 계룡시가 주최가 되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며, 또한, 계룡시 주관으로 지원협의회도 구성될 예정으로 함께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 노력하겠음
- 국방부와 의 업무협약(MOU체결)을 체결하여 인력, 장비 등 3군과의 세부적 협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음
- 2020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통해 일회성이 아니라 계룡지역이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특화프로그램, 공익사업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무엇보다 엑스포의 성공개최의 열쇠는 지역내부의 힘인 계룡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임

3 청중토론

-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도 2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엑스포조직위원장은 국방부 장관, 삼군총장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반드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함

[질의: 예비역 장성]

- 육·해·공군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계룡에서 열리는 군문화 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질의: 예비역 장성]

- ⇒ 지금까지는 단순 홍보, 판매 위주로 군문화 축제를 했다면,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실질적으로 계룡시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노력이 필요함

[답변: 김원태 도의원]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일회성이 아닌 계룡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
 2.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방안 및 계룡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각종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수익형 글로벌 프로그램, 고정시설 설치 등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상생발전을 위해 3군본부의 적극적 협조, 제대군인을 활용한 대외 협력 기능강화, 계룡시민의 역할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설문조사 결과>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91%	9%	-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이 충실했는가	64%	36%	-
일반 참석자와 질의답변 등이 원활하였나	64%	36%	-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은 11명에 불과하였으나,

- 응답자 100%가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내용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에 대한 만족하였다고 응답

⇒ 금번 토론회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2020 계룡군문화엑스포의 성공개최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정토론회로 평가 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문화정책과, 관광마케팅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 계룡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18. 2. 28.(수), 14:00~16:30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을 모색한 토론의 장으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통합적인 예방 지원 체계 구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관리자(학교장)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변화가 요구됨
 - 가정교육 및 학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입학단계의 학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 법제화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 처분위주의 학교폭력 처리보다는 학교장 종결제 등 교육적 접근 및 간접 체험프로그램 및 자치활동을 통한 관계 회복적 예방대책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의 조성과 확보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으며,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토론은 다소 아쉬웠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논의 내용

1 주제발표

<정태모(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관)>

-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정책 중 2014.12.22 발표된 5개년기본계획이 가장 괄목할만한 내용이며, 오늘 주로 토론될 사항으로 그 중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함
- 학교폭력은 점차 사이버 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SNS 따돌림 등으로 인한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교육적 접근보다 조치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학교관계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서로 반성하고 화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학교에서는 사후 조치 중심의 행정조치로 담당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①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재심과 소송으로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 중결 시에는 은폐 축소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고 있음
- ② 가해학생 조치 학생기록부 기록문제

- 학생부 기록문제를 계속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법정으로 가는 사안도 증가하고 있음
-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문제점
 -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학부모들이 과반수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신으로 다툼이 계속되면서 법적 대응으로 가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일부지역에서는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참석률도 저조한 상황이며, 학부모가 과반수 차지로 인한 온정적 사안 처리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됨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학부모 상담 강화 및 학부모 교육 법제화 추진, 가·피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지원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내실화가 추진되어야 함

2 지정토론(6인)

① 장기승(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학생들의 다툼을 법의 잣대로만 처리해야 하느냐? 그 부분을 학생생활 기록부에 기재해서 평생 오점으로 남겨야 하느냐? 깊이 생각해봐야 함
- 경미한 경우에도 법의 잣대로만 처리해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다보니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 교육청과 도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 변호사 채용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 시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 회복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통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학교폭력업무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업무로 학교현장에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바꿔 나가는 화해와 참여의 학교문화 조성이 요구됨
-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여 나온 좋은 의견들이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안상원(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장학사)

- 사소한 다툼과 단순한 장난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로 이어지면서 교우관계 훼손, 조치중심의 사고처리방식,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간의 분쟁이나 재심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각자 제 역할에서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학생 중심 소통 중심의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보 적이고 징벌적인 처벌중심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지도가 필요함
 -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어야하며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 적절한 초기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가정 차원에서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속적인 대화시간을 통해 가정의 교육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올바른 부모교육의 선행되어야 함
 - 학교폭력에 연관되었을 때 배신감이나 실망이 아닌 학교에 대한 신뢰와 협력으로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의 면담이나 SNS를 통해 내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유관기관 차원에서는 전문인력풀로 진로상담사나 의사, 경찰, 변호사 등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방법 교육 의무화 및 방과후 학생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의 보급과 놀이공간의 확보 등 정부부처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근절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애정과 관심 인격을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③ 김호중(청양고등학교 교장)

- 강제전학,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인해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가해자 부모는 학교를 원망하게 되어 법적대응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 이로 인해 1학년때 발생한 학교폭력이 법적대응으로 인해 졸업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 학교현장에서 전개되고 있음
- 또한, 학교관리자의 법률적인 지식 부족과 상담능력 미흡으로 인해 민원이 전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림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2)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함
- 3)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가 단계별로 관리되어야 함
- 4)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함
- 5)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특별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해야함
- 6)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④ 노희철(설화고등학교 학생부장)

- 학생부를 5년간 담당하면서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함
- 1) 학교폭력은 법으로 지정된 범죄라는 측면과 그럼에도 교사는 교육자로서 학생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감싸안아야 한다는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3)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들이 연계된 범죄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⑤ 김미경(설화중학교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함
- 또한,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과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이 조화롭게 발휘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로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림
- 1) 인성교육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부모교육을 통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함
- 2) 빠르게 성장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의 학령에 맞는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3) 자녀와 또래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간섭이 아닌 다양하고 적극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이 필요함

⑥ 양민지(온양용화고등학교 학생)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발생 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들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학생의 입장에서 예방 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림
- 1) 영상물 시청이나 일방적인 지도에 의한 전달교육이 아닌 역할극을 통한 교육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느껴본다면 학교폭력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급 자치활동 및 학생회 주관 학교폭력 부스 운영을 통한 직접 체험 활동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목격 시 대처 방법을 배우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 3) 학교폭력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주변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조금만 더 바라봐주는 애정과 관심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함

3 청중토론(질의답변)

① 아산우리소리창극단 김판순 단장

- ㉠ 학생들의 핸드폰 관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폭력은 가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폭력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서 너무 학교폭력으로 몰아가는 경향과 법의 잣대로만 학생들을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

학생간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가 빠진 사례를 겪어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로 가해 학생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음

이때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법적해결이 아니라 가해자 부모가 성실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 간 화해모드로 이끌어줘야지 학교폭력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법의 잣대로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답변 : 노희철 설화고등학교 학생부장)

- ⇒ ㉠에 대하여 학생들의 핸드폰 관리는 학교별로 제정되어 있는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됨

일과 중 사용 제한을 위한 일괄 수거 등도 학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규칙을 살펴봐야 할 것임

- ⇒ ㉡에 대하여는 우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음. 그래서 학교폭력이라고 무조건 법적 처벌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할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하게 됨

다만, 학교장의 종결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임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무조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생각해서 싸움이 시작되곤 하지만, 무조건 조치사항을 내리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주시기 바람

또한, 학교장 종결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원칙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람

② 배방고등학교 학부모(충남도교육청행복나눔기재단 이미정)

-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며 선행되어야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은 공감을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학부모들을 교육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집에만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 1) 도교육청이나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등의 홈페이지에 자녀와의 대화 기법, 감성코칭 등의 교육을 탑재하여 교육이수를 의무화 한다면
올바른 자녀와의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함
-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한 학교의 예산 지원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주길 소망함

(답변 : 정태모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 ⇒ 충청도 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는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저녁시간을 이용한 학부모 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인 점을 고려하여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 충청도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대한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들께 보다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강화방안 등을 관련 정책부서에서 수립하도록 하겠음

(답변 : 좌장 김성기 교수)

- ⇒ 이미정학부모님의 지적이 정말 중요함. 맞벌이 부부는 더욱 교육을 접하기 어렵고, 10%만 참석해도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함
- ⇒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육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진입 단계에서의 학부모교육임
- ⇒ 입학식을 활용하여 진입단계에서의 학부모교육을 확실히 시키는 방안들을 교육부 계획에는 포함시켰는데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임. 향후 진입 단계에서의 학부모교육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③ 아산시아동정책모니터링단장 윤치상

- 10여년 동안 청소년 감동캠프를 매년 2번씩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학교에 확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
- 학생과 학부모가 2인 1조로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간 소통중심의 4시간에서 8시간짜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 1) 담당 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않고 그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함
 - 2)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 사실 입학식 때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하는 일방통행식 교육만으로는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이 가장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중요함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의 한 통로로써 자녀와 학부모간 소통 프로그램 이수율 법제화시키거나 참석한 학부모님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들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제안사항)

④ 초등학교 학부모(성명 미상)

-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음. 요즘은 학생들이 덩치가 커서 엄마들 경우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음
- 목격했을 경우 외면해야 하는지 선도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 김호중 청양고등학교 교장)

- ⇒ 학교폭력을 목격했으면 신고해야 함. 117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학교 학생의 학교장에게 할 수도 있음
- ⇒ 신고 시에는 진위여부를 파악 후에 절차에 따라 처리하므로 무조건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시에는 신고를 해야함
- ⇒ 신고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신상이 알려져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며, 비밀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 ⇒ 방관자도 똑같은 학교폭력을 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도 신고하는 용기있는 학생 정의로운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교육적으로 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답변 : 정태모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 ⇒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는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앱도 운영하고 있음
- ⇒ 학교폭력을 목격할 경우에 신고하게 되면 도 교육청, 117과 연계될 수 있는 앱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답변 : 좌장 김성기 교수)

- ⇒ 폭력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냐는 내용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임. 요즘은 학교폭력신고 117전화도 있고 117앱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
- ⇒ 안전Dream이라는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도 웹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Wee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학교에서 입학식 등에서 안내를 한다면 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⑤ 온주어린이집 원장 이석미

- 앞으로 아이들이 성적에 의해 평가받지 않는 교육제도가 활성화돼서 성적순으로 존중받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보았음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의 일환으로는 학생들에게 문화컨텐츠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준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끼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됨
- 그렇게 표출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고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됨(건의사항)

⑥ 좌장(김성기 교수) 정리발언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민원을 제기하면서 가장 교권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됨
- 학생의 학습권침해로 귀결되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법적 사안처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교육적 사안임을 교육동동체가 함께 인지해주시기 바람
-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교원침해와 학습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학교폭력 사안에 임해주시길 바람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 중 여덟번째가 전학인데 소위 말하는 강제전학임속칭 폭탄돌리기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해결이 전혀 안되는 조치라 생각함
- 법적으로는 강제전학 조치가 있더라도 학교에서는 최대한 전학의 효과를 가지는 위탁교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 내가 교사인가 내가 판사인가 내가 경찰인가 내가 상담사인가 고민하면서 혼자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 현실임
- 미국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과반수가 교원 외 직원이지만 우리나라는 70~80%가 교원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원을 파견해 학생들을 관리를 해줌으로써 교원들을 그 시간만큼은 해방시켜 줌

-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학교를 지원해 교사들이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떨까 부탁을 드려 봄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전담 경찰관, 상담사 등의 역할로 교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학교에 이러한 지원인력들이 늘어난다면 교원들이 언젠가는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음
- 학교폭력 발생 시 힘들더라도 교육자로서 교육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리며, 불가피하게 법으로 처분해야할 때도 있겠지만 그 직전에는 최대한 교육자의 입장을 견지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수 있으며 그 사람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킨. 즉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것임
-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자 함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2.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
 3. 학교폭력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중심 체험 위주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6.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8. 학교폭력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9. 학교안팎 청소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10. 사이버 학교 폭력 확산 방지대책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설문조사 결과>

문항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14	100%	9	64%	3	21%	2	14%	0	0%	0	0%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 내용이 충실했는가?	14	100%	8	57%	6	43%	0	0%	0	0%	-	0%
일반 참석자와 질의답변 등이 원활하였는가?	14	100%	9	64%	3	21%	2	14%	0	0%	-	0%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은 14명으로 참석 인원 에 비해 적은 참여였으나,
 - 응답자 64%가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일반 참석자와 질의답변 등이 원활하였다고 응답함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모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주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설문조사 실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설명에 치우친 부분과 토론회 내용을 보다 더 깊게 고민해야하는 정치관련자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했음

<성 과>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 폭력 관계자가 원하는 실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학교폭력의 교육적인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사후 해결보다 예방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이었음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인성체육건강과)
 - 충청남도교육청(학교정책과)
 - 충청남도의회(교육위원회)

우강면 지역 활성화 방안

〈'18. 3. 2.(금), 14:00~16:00 / 당진시 우강면사무소〉



I 총 평

- 고령화·마을공동화·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우강면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농촌 마을의 농업유산 및 지역적 특성(천주교 등 역사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우강면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솔피성지 등 천주교 문화유산, 택지개발 및 행정타운 조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통한, 주민을 위한 사업선정을 위한 능동적인 주민참여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다양한 국비공모사업선정을 위해 주민들의 총의에 기반한 사업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논의내용(요약)

1 주제발표 (1인)

① 김두순 사무국장(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세계화,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화·마을공동화·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 우강면 등 면(面) 단위 마을공동체 침체 문제 지속·강화
- 농촌정책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농촌활성화 정책으로 변화
 - 기존 물리적 시설 확충 중심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 신뢰구축 등 무형의 사회적 자본 구축의 중요성 및 유·무형자원의 융합적 활용 필요성 강조
- 우강면은 농업자원 및 천주교 문화유산 등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서비스가 지역에 골고루 전파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필요
 - 다만, 지역성, 농촌성, 전달성, 자주성, 공생성이라는 거점 지역개발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강면민의 주도적 참여 필요

② 지정토론 (5인)

① 김영구 위원장(우강면 주민자치위원회)

- 고령화, 열악한 재정, 합덕읍과의 마을 공동화 현상 등으로 우강면의 활력 감소, 면민의 소외감 증가
-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농업유산, 솔피성지 등 천주교 역사문화, 송산리 행복주택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버그내순례길 인도 설치', '화합로 보행로 및 경관조성', '오솔길 복원 및 우강 아우름터 조성', 다목적 복지관 '약시우강 사랑채' 건립사업 추진 계획
- 특히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국비공모사업)선정을 위해 면민의 협심·협업이 중요함

② 박연규 위원장(면천면 주민자치위원회)

- 면천면은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실패 후 면민의 공감과 화합을 기초로 '17년 당해 공모사업 선정
- 공모사업 선정의 성공요인은 면천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론화, 토론, 소통을 통한 합의, 면민의 주도적 참여 및 추진위원의 치밀한 준비임

③ 박영순 대표이사[(주) 우리누리]

- 우강면의 지역적 특성,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우강면은 인근의 신경제중심지로 성장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솔피성지 등 천주교 문화유산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행복주택, 행정타운 등 발전의 기반이 조성됨
- 다만, 면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배후지 결절 보완 사업, 택지개발지로부터 거점중심지로 이동 동선 확보, 여성중심 복지시설 및 신규 인구 유입을 대비한 아동 관련 복지프로그램 마련 중요

④ 서은숙 팀장(충청남도 농산물유통과 농산물마케팅TF팀장)

- 우강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논농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쌀 값 하락 등 논농업 쇠퇴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강면민의 50%이상인 농업인의 소득 감소
- 최근 쪽파 재배를 위해 하우스를 지원 받는 등 소득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남
- 우강면 활성화와 관련하여 타작물 전환 및 '농산물 유통센터', '6차 산업센터' 등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고려할 필요 있음

⑤ 이상준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비공모사업선정에 있어 '누가 운영·이용'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준임
- 따라서 당해 지역 및 지역민 모두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 간의 협의, 합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함
 -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인식확산이 중요

③ 자유 및 청중토론 (3인)

- 기초생활거점육성 관련 사업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 유성남 우강면장]

⇒ 당해 사업은 관련 시설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소득사업을 할 수 없음. 다만, 운영비 등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사업의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노인치매 국가사업을 기관 협조 하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답변: 박영순 대표이사]

- 70세 이상이 23%인 우강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화 관련 사업

및 우강면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 타작물 전환 관련 시설채소 등 재배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견: 김명선 의원]

⇒ 고령화에 대한 역발상으로 교육·문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 방안, 상품개발·타작물 전환 관련하여 생산보다 마케팅 등 판로의 다양화·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답변: 김두순 사무국장]

⇒ 타작물 전환 관련하여, 현재 도 차원에서는 두류, 쪽파 자급률 낮음. 당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품목 선정, 유통·판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단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음

[답변: 서은숙 팀장]

○ 농사 목적 1만 평방미터 이상 도유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방식이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됨. 과거처럼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없는지?

[질의: 김영민 우강농민회장]

⇒ 기존 농업인의 도유지에 대한 우선권 부여 문제는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의견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음

[답변: 김명선 의원]

○ 우강면민이 지켜온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천주교 문화유산 등 다양한 지역적 가치의 융합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 면민의 기초생활 거점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관련 유·무형 자원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적극적 주민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 및 합덕, 면천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망 구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강면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김명선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고령화·마을공동화·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우강면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 필요
 - 당해 지역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지역적 특성(역사·문화·관광 등)의 유기적 융합방안
 - 단순한 물리적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적극적 주민 참여, 신뢰형성 등 사회적 자산 형성 및 유무형적 자산의 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재원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 관련하여,
 - 당해 지역의 유·무형 자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에 의한, 주민을 통한, 주민을 위한 사업 기획 및 관리·운영방안의 중요성 재인식 필요
 - 국비공모사업 관련 정보 및 응모방식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의 필요성
3. 농촌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농촌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관련 유·무형 자원의 융합적 활용 및 재원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에 있어 적극적 주민 참여, 소통 및 총의 수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당해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 및 이를 체계화, 제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를 위한 민·관의 지원 등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고양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	100%	-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이 충실했는가	50%	50%	-
일반 참석자의 질의답변 등이 원만하였나	-	100%	-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3명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은 2명에 불과하였으나,
 - 응답자의 100%가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응답
- ⇒ 금번 토론회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우강면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정토론회로 평가됨

III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 농촌마을지원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당진시(농업정책과, 건설과, 우강면사무소)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 방안

〈'18. 3. 13.(화), 14:00~16:00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I 총 평

- 층간소음, 관리의 불투명성 등으로 야기되는 공동주택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신뢰에 기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에 기초한 신뢰형성, 이를 통한 공동주택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소통, 또한 관련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지원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 노후아파트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논의내용(요약)

1 주제발표 (1인)

① 변영수 소장(아파트공동체문화연구소)

- 아파트도 마을과 같은 생활공동체의 하나로서 사적 소유권에만 함몰되지 않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층간소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고용문제 등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 및 주민과 관리인간의 갈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결 가능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장점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 및 주민의 참여, 소통 필요
 - 아파트는 편리한 주거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동생활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보육, 교육, 다양한 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및 나눔을 가능케 함
 - 이러한 순기능은 주민 및 관리인 등 다양한 아파트 공동체 주체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효율적으로 발휘됨
 -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과 주민간 편지교환 사례, 새로운 이주민 선물제공 프로그램, 주민공동체설작업 사례 등에서 보듯이 작고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공동체 주체 사이의 신뢰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가능케 함

- 지방정부 역시 아파트 주민자치회 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주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 있음

② 지정토론 (5인)

① 이광수 학장(순천향대학교 산학평생대학)

- 아파트 분리구조, 공동체 생활로 인한 장·단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공동체 관련 고유문화 유지, 발전에 악영향
- 최근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한 권리인식, 문화형성, 지역 확산 등 해결 방안 논의 중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시
 - 평균 8년의 아파트 거주기간이 자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주목하여 자녀 및 교육 관점
 - 아파트 주민의 연령, 평균 소득 및 생활 수준 유사한 점,
 - 최근 '역세권'이 아닌 '숲세권'이란 키워드가 암시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위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소통 필요

② 전창수 지부장(아파트관리소장협의회 아산시지부)

- 아파트관리업무에서 회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단순한 용도 전용이 회계비리로 사회문제화 되는 등 관련 업무 처리기준이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 있음

- 최근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항목이 단순화·통일화됨으로써 관련 회계비리 감소 추세
- 재활용품 등 아파트 수익관련 회계절차 강화로 운영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운영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 있음
- 충남도에서 시행중인 “으뜸아파트 선정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활성화를 통한 분쟁감소 기대

③ 김성자 총무(아산시 경남아너스벨아파트부녀회)

- 층간소음으로 대표되는 아파트 주민간 분쟁의 주원인은 상호 무관심과 소통부재에 있음
- 노후아파트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자체의 부재 또는 협소의 문제가 있음
- 각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자체 지원 필요

④ 정경주 원장(아산시 코코몽어린이집)

- 주로 아파트 1층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적절한 양육 및 보육을 위해 에어컨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아파트 관리규약상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 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의 필요성 있음
- 어린이집은 다양한 주민들이 공유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하며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경로당 방문, 할머니 등 다양한 주민의 책임기 프로그램 등 활성화 필요

⑤ 김기룡 부국장(신아일보)

- 아파트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관리센터 설립 필요

- 일본의 맨션진단센터와 같이 아파트의 전문적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기관(가칭 충남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

○ 아파트 관련 다양한 주체(주민, 관리인, 용역회사 등)간의 신뢰증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관리인, 경비원 등을 단순 고용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성, 존중 등을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의 한축으로 대우하는 인식 개선 필요

③ 자유 및 청중토론 (3인)

○ 엘리베이터 내에서 먼저 인사를 하는 등 다양한 아파트 공간에 주민 스스로 소통하는 노력 필요

[의견: 청중1(으뜸아파트 주민)]

○ 고령의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라 볼 수 없는 제설작업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 관리소장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질의: 청중2(단독주택 주민)]

⇒ 주민 공동 제설작업 방안, 불이행 시 제재방안 부과하는 등 주민 스스로 관련 자율규약 제정하는 방안 강구할 수 있음. 특히 경비원 역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체의 일원이라는 인식개선 필요

[답변: 김기룡 부국장]

○ 주민간 불통, 불신,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 마련 중요

[의견: 청중3(풍기아이파크아파트 주민)]

⇒ 아파트 공동체 형성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 가능. 경기도 한 아파트는 새로운 이주민에게 작은 환영선물을 함으로써 주민간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를 진작시킨바

있음. 이웃간 소통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음

[의견: 변영수 소장]

○ 공동주택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주민 및 다양한 관리주체 스스로 존중, 참여 및 주인의식을 고양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함
 - 신뢰를 기반으로 주민간 층간소음문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주민과 관리인간 경비원 고용문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해결가능 함
 - 특히 단지내 어린이집, 학교의 주민 소통프로그램 활성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있음(영유아와 노인간 교류프로그램, 학생과 주민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편지교환 프로그램)
- 아파트 관리방안의 효율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와 통장의 일원화, 입주자대표자 간선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갈등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방안 강구
 - 특히 노후아파트 시설지원 관련 국가 지원 방안 부재함. 공동주택 관리법에 관련 제도 마련 건의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노후아파트 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조비율 인상 필요
-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주민간 신뢰형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연구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김응규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주체들(주민, 관리인 등)의 이해와 관심을 통한 신뢰형성 및 이에 기반 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단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원생 및 학생들과 주민간 교류 프로그램(상호 방문, 편지교환) 등 타시도의 공동체 활성화 모범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
 - 공동주택의 특성 반영이 가능한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필요
2. 노후아파트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3. 공동주택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 구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신뢰에 기반 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주민간, 주민과 관리인간의 신뢰형성 및 적극적인 참여,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 및 이를 체계화, 제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를 위한 민·관의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체계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고양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이 1명에 불과함
 - ⇒ 조사결과의 데이터로서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분석하지 않음

Ⅲ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아산시(주택과)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와 주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산업단지 내 거주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주민지원방안 모색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대덕구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산업단지와 주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URI 미래전략연구원 김흥태 원장의 “대전산업단지 주변 대화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 후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기환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장, 조원관 기후대기과장, 한광오 도시정비과장 및 지역주민으로 강병문, 최은미씨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질의응답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로 인해 단지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교통, 복지, 환경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집중논의 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역차별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방안을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반영하여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협력 MOU 체결

경기도의회는 6일, 도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상생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정기열의장을 비롯해 김호겸 부의장과 배수문의원이 참석하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이승종 원장과 김순은 지방의정리더십 주임교수가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공동 개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공동참여 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담고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기열 의장은 지금까지 경기도의회가 관·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의원의 역량강화와 정책능력 향상을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행정대학원으로서 국내 최고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서울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을 맺어 의원님들의 최고 지성을 향한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지방분권 전문교수님들과 함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함께 할 수 있어 지식함양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올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지만 이 협약으로 도의원님들의 지방분권 저변화를 위한 일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구회,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 농업 공익적 강화,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 등 논의 -

전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성일)는 1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도의원과 농민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전남 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중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강화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검토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시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일 의원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직불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화 의원도 “지속가능한 전남 농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민수당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구회는 김성일 대표를 비롯해 오미화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포럼이나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농어촌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경제연구회, 「지역기업이용촉진」 토론회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연구회(회장 정광식 의원)는 3월 8일(목)오후 3시부터 창원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이용촉진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조선산업 부진과 한국GM 논란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로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와 창원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공공구매 입찰관리 전문가인 비즈케어 김상연 대표의 주제발표를 통해 경남도의 최근 5년간 지역기업 구매실적 진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증대 방안, 지역 소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조효래 창원대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광식 경상남도의원(지역경제연구회 회장), 정현숙 경남여성경제인협회장, 김영문 마산대 교수, 정민영 경남ICT협회 부회장, 이문재 경남신문 경제부장 등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현숙 경남여성경제인협회장은 도내 지자체의 대형공사 발주 시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 및 부수자재 조달을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화 할 것과 경제영역에서의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현재 경남도만 제정)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였다.

○ 정민영 경남ICT협회 부회장은 경남에서 500여개 이상의 ICT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ICT 전문 교육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주기적인 신기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문재 경남신문 경제부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지역기업은 그 부를 다시 지역민들을 위해 환원하는 선순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기업의 생산품을 사용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정광식 경상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관급 공사 시 지역기업 비중 상향 노력과 함께 지역 내 대기업에서도 하도급 시 지역기업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기업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 합심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 해결사와 함께 제주시 다문화 가족과 첫 만남 스타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는 올해에도 법률전문가인 민생 해결사와 함께 도민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듣고, 살피고, 확인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제주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 상담소』를 운영한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는 매월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첫 시작으로 3월 7일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불편사항 및 궁금한 사항 등을 들었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동상담소 운영으로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을 비롯한 센터를 방문한 내방객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활법률·세무·건축·부동산·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1:1 전문상담의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느끼는 숨은 불편을 찾아내어

입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과제로, 조례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화 추진을 통해 제도상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행정처분 등에 의한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정 체감도를 보다 더 높이고, 소통의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동상담소”를 찾아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불편하게 느꼈거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상담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도 당부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생활법률 등에 대한 상담 기회의 문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다양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는 2017년도부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10회·143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읍면동 위주의 방문에 따른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해결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계층별, 업종별 등 도민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3.6.] [대통령령 제28690호, 2018.3.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공공조달 분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나.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 신설)
중앙관서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노임단가가 변경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의 노무비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노무비를 증액하도록 함.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1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제10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 신설).

다.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21조제2항 신설).

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3.2.] [법률 제15420호, 2018.3.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0조의 제목 “(적극적 조치)”를 “(적극적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양성평등주간)”을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으로”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13.] [법률 제15462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선의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되는 경우 이를 어업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조제1호 중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을”을 “구획어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로, “어선”을 “어선·어구(漁具)”로, “어구(漁具)의”를 “어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어선”을 “어선·어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을 각각 “어선·어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어선감척사업의”를 “어선·어구감척사업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선감척사업”을 “어선·어구감척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어구”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선”을 각각 “어선·어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할 수 없는”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으로, “우선적으로 어선”을 “우선적으로 어선·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선감척을”을 “어선·어구 감척을”로, “어선”을 “어선·어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령(船齡)”을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마력”을 “마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어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 감척 대상자”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어선감척사업”을 “어선·어구감척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선”을 각각 “어선·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 감척”을 “어선·어구 감척”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어선·어구감척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어선”을 “어선·어구”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 중 “제13조 및 제17조”를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한다.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3.13.] [대통령령 제28701호, 2018.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안전에 관한 해외규격을 획득하려는 중소기업의 지원,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소기업제품의 불량률 관리 또는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 획득에 대한 전문인력 및 지원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각종 연구기관,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나. 최근 2년 이내에 5건 이상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라.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향상사업: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의견18-0032, 2018.3.12., 충청남도의회]

【질의요지】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충청남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예산안 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하 “충청남도 조례”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충청남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제약(制約)을 가저올 것으로 보이는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충청남도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

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예산안 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법과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실정에 맞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참전유공자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법령해석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나 예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충청남도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예산안 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의견18-0025, 2018.3.13.,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경찰법」 제3조제5호에

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법」 및 「도로교통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같은 법에서 바로 시장등에게 법정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등에서 차량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과태료의 감면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주차 또는 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 예정된 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조례로써 규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되므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의견제시 12-0358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소관사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참조), 기관위임사무인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의견진술심 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및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비교적 더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등의 관련 사무의 처리 주체는 시장등으로서 해당 사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견해가 있는바, 향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 사정변경을 고려한다면, 그런 전제 하에 이 사안의 사무의 성격을 다시 판단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개괄적인 경력 및 능력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관련)

[의견18-0027, 2018.3.6., 강원도의회]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개괄적인 경력 및 능력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제1호),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2호),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강원도 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그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자의 개괄적인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인지, 지방의회의원들도 발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이 갖추어야 할

개괄적인 능력이나 경력 요건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으로서 조례안 발의권 자체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의원이 발의하려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항을 내용을 보면, 강원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개정안만 보면 강원도지사가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경력과 능력 기준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정도로 보이고, 특정 지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인사권한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과 같은 정도의 규정을 둔 조례 개정안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조례안 발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에서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조례 개정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되는 조항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주면서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 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의견18-0008, 2018.2.2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 강북구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회규칙(「지방자치법」 제43조)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주체이고 효력발생 요건으로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고 공포·시행하는 규칙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는 법령에 명문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규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이주희 저,

467쪽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선거 공약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한 자연인이 선거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실천할 사항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비록 특정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 공약이 곧바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행하거나 관리할 과제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선거 공약의 실천계획 수립이나 추진실적 점검 등이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사항의 실천이나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입법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년 3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